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성인지 예산현황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기장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13	3,856
여성정책추진사업	1	433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11	2,423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1	1,000

▶ 2016년 당초예산 기준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2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기장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481,831	899	2

▶ 2016년 당초예산 기준

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 원 기 타 부 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❖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비고
	총 액	899	
도시기반조성과	죽성로 284-8 일원 도로포장	10	
"	좌천삼거리~좌동삼거리 보도조성	200	
"	하리마을 안길 포장	40	
"	횡계리 109번지 일원 도로포장	100	
"	석길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(소2-675)개설	100	
친환경농업과	일광면 원리 748-43번지 일원 농업기반시설 정비	100	
"	철마면 응천리 674번지 일원 구거정비	70	
"	철마면 응천리 877번지 일원 구거정비	100	
"	철마면 이곡리 185번지 일원 농로정비	60	
안전총괄과	회룡마을회관 앞 도로변 안전봉 설치	24	
선진교통과	협성 르네상스 입구 불법주정차 CCTV 설치	45	
산림공원과	정관 완충녹지 수목식재사업	50	

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(http://www.gijang.go.kr/kjrepresent/sub3/sub3_6_5.jsp)

4-3. 성과계획서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기장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계	5	82	178	134	467,427	424,572	42,856
본청	1	6	10	9	70,950	77,047	-6,097
직속기관	1	4	16	9	19,842	13,719	6,123
의회사무국	1	1	3	2	705	762	-57
읍면사무소	0	0	0	0	3,734	3,212	522
교육행복국	1	35	77	54	242,885	214,162	28,723
창조경제국	1	36	72	60	129,312	115,670	13,642

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
4-4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36.73	64.42	36.25	40.59	43	30.85

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
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53	17	-36
	부단체장	36	36	0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51	162	-89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	46	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69	69	0
	의원국외여비		24	
지방보조금		11,055	10,073	-982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	612	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	1,107	
공무원 일·숙직비			111	

☞ 우리 군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.

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
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(세출 효율화)과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기준재정수요 반영액 (세출 효율화)	기준재정수입 반영액 (세입 확충)
4,337	-5,005

- ▶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5. 12. 29.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❖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요 반영액	
	2015년	2016년
계	-4,191	4,337
인건비 절감	0	42
지방의회경비 절감	15	22
업무추진비 절감	128	169
행사·축제성경비 절감	-553	586
지방보조금(민간이전경비) 절감	-4,686	3,572
지방청사 관리·운영	905	323
읍면동 통합운영	0	0
민간위탁금 절감	0	-377

❖ 수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입 반영액	
	2015년	2016년
계	1,184	-5,005
지방세 징수율 제고	-1,811	-457
지방세 체납액 축소	2,906	-3,475
경상세외수입 확충	-2,737	2,362
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2,010	-2,646
탄력세율 적용	755	-723
지방세 감면액 축소	61	-66

4-7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☐ 2015년에 우리 군이 수입징수태만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감액 사유	위반지출	지방교부세 감액금액
합 계		63
수입징수태만	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	1
법령위반과다지출	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정산 부적정	19
법령위반과다지출	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정산 부적정	13
법령위반과다지출	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계약 추진 부적정	26
법령위반과다지출	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관리비 지급 부적정	1
수입징수태만	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사실 통보업무 소홀	3

- ▶ 지방채발행 승인(지방재정법 11조, 55조), 투융자심사(지방재정법 37조, 55조), 위반, 예산편성기준(지방재정법 38조) 위반 및 감사원·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

4-8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☐ 2015년에 우리 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증액 사유	평가분야와 성적	지방교부세 증액금액
합 계		
	해당없음	

- ▶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